#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83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고동진·박충권·백종헌

김대식 • 안상훈 • 권영세

서일준 · 김위상 · 김태호

김성원 · 정희용 · 박수민

조지연 · 서명옥 · 서범수

조배숙 • 박성훈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 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취득 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 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6조의5).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명"을 "2명"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40만원"을 각각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2억원"을 "15억원"으로, "500만원"을 각각 "80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	위한 감면) ①
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	
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	
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 <u>3명</u> 이상을	<u>2명</u>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	
육을 목적으로 <u>2024년 12월 31</u>	<u>2027년 12월 31</u>
<u>일</u> 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	<u>일</u>
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	
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	
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	
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	
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u>14</u>	<u>20</u>
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0만원
<u>140만원</u> 을 초과하면 <u>140만원</u> 을	<u> 200만원</u> <u>200만원</u>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4. (생략)
-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차를 <u>2024년 12월 31일</u>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 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 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 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1. ~ 3. (생 략)
- ③ ④ (생 략)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 저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

·.
1. ~ 4. (현행과 같음)
②
<u>2027년 12월 31일</u>
<u>.</u>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게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
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

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 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 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을 공제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u>15억 원</u>
<u>800</u> 만원
<u>800만원</u>
<u>800</u> 만원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